

1996. 5. 10(金)

- 都市産業委員會所管 '96年 第1回追加更正豫算案 -

豫 備 審 査 報 告 書

都市産業委員會

- 도시산업위원회소관 '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-

예 비 심 사 보 고 서

1996. 5. 10(금)

1. 도시산업위원회소관 회부 예산안

가. 세 출 예 산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 산 액	기 정 예 산	증 감	
				1회 추경	증감율 (%)
	계	46,684,686	40,097,555	6,587,131	16.4
	일 반 회 계	28,460,419	22,920,031	5,540,388	24.2
	특 별 회 계 (3 건)	18,224,267	17,177,524	1,046,743	60.9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년 4월 30일 —————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6년 4월 3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50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도시산업위원회('96. 5. 9)상정

제2차 도시산업위원회('96. 5. 10)의결

3. 예산안 규모 및 특정

가.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

○ 기능별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 산 안	기 정 예 산 안	증 감	
				1회 추경	증감율 (%)
	계	28,460,419	22,920,031	5,540,388	24.2
	사 회 개 발 비	12,291,410	10,127,737	2,163,673	21.4
	경 제 개 발 비	16,136,449	12,792,294	3,344,155	26.1
	지 원 및 기 타	32,560	-	32,560	

○ 부서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예 산 안	기 정 예 산 안	증 감	
				1회 추경	증감율 (%)
계		28,460,419	22,920,031	5,540,388	24.2
사 회 산 업	소 계	10,937,840	9,318,292	1,619,548	17.4
	환경 보호 과	280,348	260,919	19,429	7.4
	청 소 행 정 과	9,561,492	7,987,428	1,574,064	19.7
	지 역 경 제 과	1,096,000	1,069,945	26,055	2.4
	소 계	17,522,579	13,601,739	3,920,840	28.8
	교 통 행 정 과	144,398	140,741	3,657	2.6
시	도 시 개 발 과	84,969	83,968	1,001	1.0
	건 축 과	427,851	222,736	205,115	92.0
	건 설 과	16,712,942	13,014,241	3,698,701	28.4
	지 적 과	152,419	140,053	12,366	8.8

나.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소 관 별	예 산 안	기 정 예 산 안	증 감	
				1회 추경	증감율 (%)
계		18,224,267	17,177,524	1,046,743	60.9
주 차 장	교통행정과	4,304,511	3,658,300	646,211	17.7
주거 환경 개선 사업	건 축 과	554,756	154,224	400,532	260.4
장림유수지 이설 사업	도시개발과	13,365,000	13,365,000	-	

라. 예산안의 특징

- '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한 잉여재원과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하고,
- 법적, 의무적 경비와 당면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추가확보하기 위함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환경관리에 있어

- 환경오염 행위 현장 보존용 카메라 구입은 환경문제가 주민의 삶의 질향상과 밀접한 업무로 단속활동 강화를 위하여 단속공무원 전원이 소지하도록 예산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

○ 청소행정관리에 있어

-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발효제 구입비 전액 과목 경정삭감은 당해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며
- 생활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반입료는 부산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개정 에 대비 '95 반입량을 기준으로 추정량을 산출 예산편성 된 것으로 반입료 예산절약을 위한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책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.

○ 지역경제관리에 있어

- 국고보조금 반환금등은 당해 보조사업집행시 사전 면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목표 미달로 인한 보조금 반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○ 도로유지관리에 있어

- 도로개설로 인한 토지매입비(추가)는 사전 완벽한 조사계획수립으로 본 예산편성시 반영토록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○ 지적관리에 있어

- 토지평가위원회 수당계상은 '95. 12 토지평가위원 보강(구의원 2명)으로 7명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명으로 계상되어 있음

○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등을 공영주차장 건립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
○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의 규모 및 자체세입원을 감안할때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.

5. 심사보고 요지 (삭감액 내용)

○ 일반회계

구 분	예 산 액	위 원 회 삭 감 액	조 정 예 산 액
총 계	5, 540, 388	40, 600	5, 499, 788
사 회 개 발	2, 163, 673	40, 600	2, 123, 073
경 제 개 발 비	3, 344, 155	.	3, 344, 155
지 원 및 기 타	32, 560	.	32, 560

6. 심사결과

○ 일반회계 세출 : 수정의결 (삭감부분 예비비로 계상)

▷ 일반회계 요구액 5, 540, 388 천원중 40, 600 천원 감액

○ 특별회계 세출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 요지

다대1지구 어린이 놀이터 정비에 있어 전반적인 보수 및 놀이기구의 교체가 필요하나

15, 000천원으로 형식적인 보수가 예상되어 예산을 증액하여 전반적인 보수 및 교체가

요망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

첨부 : 도시산업위원회소관 '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요구내역 1부.

